

입원 환자는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HOW CAN I VOTE IF I AM HOSPITALIZED?)

캘리포니아 주법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우선, 늦어도 선거일 15 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직접 투표를 할 수 없거나, 직접 투표하기를 원치 않거나,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 의료 응급 투표용지(medical emergency ballot)를 사용, 또는
 - ✓ 일반 부재자 투표용지를 사용.

의료 응급 투표용지란 무엇입니까?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 전화하여 의료 응급 투표용지 신청과 관련된 특별 요건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전화번호를 알아보려면 전화번호부의 카운티 항목에서 “카운티 선거 담당관(County Election Official)”을 찾아보십시오. 일부 병원에는 환자들이 의료 응급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 투표 용지 신청 마감일(선거 7 일 전)이 지났을 때 이러한 종류의 투표용지를 신청합니다.

선거일이 7 일보다 적게 남은 경우,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등록 유권자는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선거 관리 사무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위임하는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응급 투표용지는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선거일이 7 일보다 적게 남은 경우, 입원한 환자는 선거일이 7 일보다 적게 남아 있고 직접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 응급 투표용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환자를 대신해서 투표용지를 수령할 사람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이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을 해야 하고, 이러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환자는 이 신청서 자체에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x”라고 서명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환자를 대신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입회인(witnessed by)”이라고 기재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야 합니다.

선거일이 7일 이상 남은 경우에도 의료 응급 투표용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환자 대신 투표용지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단지 가족만이 이 투표용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재자 투표용지는 어떻게 수령할 수 있습니까?

등록 유권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 갈 수 없고 선거일이 7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반 부재자 투표용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유권자를 대신해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번호부의 카운티 항목에 등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유권자 등록 및 선거 관리 사무소로 전화하여 카운티 선거 담당관에게 문의하십시오.

부재자 투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부재자 투표 신청서는 선거일 당일까지 유권자 등록 및 선거 관리 사무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투표용지 작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입원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나 의료 응급 투표용지는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에는:

- 신원 확인 봉투(Identification Envelope)에 제공된 공란에 투표용지를 제출하도록 허가한 사람의 이름을 기입해야 합니다.
- 봉투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신원 확인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사람은 신원 확인 반송 봉투의 뒷면에 있는 공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일 오후 8:00 까지 선거 관리 사무소나 카운티에 설치된 투표소로 제출하십시오.